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11도17125 위계공무집행방해
피 고 인 **피고인 1 외 2인**
상 고 인 검사
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1노1429 판결
판 결 선 고 2012. 4. 26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 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).

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

대법관 이인복 _____